

4. 都市計画法中 改正法律

法律 第4427號 1991. 12. 14

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중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위생”을 “위생·환경”으로 하며, 동항 동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시계획구역 및 제2장제2절(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중 “고속철도·하천”을 “하천”으로, “쓰레기 및 오염처리장”을 “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로, “방조설비의 시설”을 “방조설비·열공급설비”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중 “주택지조성사업”을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

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광역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철도 등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시가지조성사업”이라 함은 주거·상업·업무기능 등이 조화있게 배치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1호(종전의 제9호)중 “이법”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로 하고, 제12호(종전의 제10호)중 “도로의 노면굴착을 수반하는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의 공급시설 및 전신노선·하수도시설등)”을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하수도시설등)”로 한다.

제2조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가계획”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계획중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4.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하고, 동조제2호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4조(행위등의 제한) ①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호의 경우 산림안에서의 재식 및 죽목의 벌채에 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쌓아놓는 행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분할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각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 “서울특별시·부산시장·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그 위임된 사항중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시장 또는 군수가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스스로 입안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구역이 같은 도(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행정구역안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2. 대상구역이 2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설부장관

제12조제1항중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신청자가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4항중 “인근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중 “도시계획예정구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을 “건설부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을 “(도시계획시설의 시설·관리)”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

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단서중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12호중 “확장 및 보호를”을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로 하며, 동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시설보호구역: 학교시설의 보호와 항만 및 업무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19조의 제목중 “지역 및 지구”를 “지역·지구 및 구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를 “제2장제2절(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및 구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2제7항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의3 내지 제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상세계획구역의 지정) ①건

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세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②상세계획구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계획을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과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

5. 골재채취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세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도로·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

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 및 규모가 건축물의 총용적과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의4(광역계획구역의 지정) ①건설부장관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여러 도시의 기능을 상호 연계 시킴으로써 도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2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구역안에서 광역계획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별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광역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에 의하여 입안할 자를 지정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스스로 입안할 수 있다.

④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의5(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제16조·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 또는 협의회 등의 구성을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도시자가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특별법에 의하여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또는 당해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시행자) ①도시계획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이를 시행한다.

②도시계획사업이 2이상의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시행하게 될 때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에 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건설부장관은 국가사업과 관련되거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거나 따로 시행할 자를 지정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시행자가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때에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서류의 공람 등) ①건설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도시계획사업의 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안에 건설부장관 또는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항중 “그 도시계획구역”을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중 “실시설계의 인가(제24조제1항의 허가를 포함한다)”를 “실시계획의 인가”로 한다.

제54조제2항중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주택지조성사업”을 “주

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환지로 보며 기준지가로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를 “환지로 본다”로 한다.

제59조제2항 및 제3항중 “도시자”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62조중 “건설부장관이”를 “국가가”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하고, 동항제2항 전단중 “시장”을 “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중 “도지사”를 “시·도시사로, “도”를 “도(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자문에 응하며, 당해 시 또는 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및 구에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호를 둘 수 있다.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중 “지방위원회 및 시도시위원회”를 각각 “지방위원회·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

회”로 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①행정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

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행정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이 경우 점용 및 사용료도 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⑤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한 날에 공공시설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⑥행정청이 아닌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업 또는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관리청에 사업 또는 공사의 완료통지를 함으로써 해당 공공시설은 제2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록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실시계획인가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및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

제86조제1항중 “주택조성사업”을 “주택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87조제1항본문중 “도시계획구역 및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하고, 동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를 적용한다.

제87조제3항제1호중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허가”를 “제21조제2항의 허가”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이 준용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승인 및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88조단서중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군수”를 “관할 시·도지사”로 한다.

제90조본문중 “1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91조본문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92조본문중 “3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94조본문중 “5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고속철도와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은 이 법에 의한 철도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각각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되는 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 및 연구지구, 업무지구 및 임항지구는 제1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

도로·철도·수도 등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시설·관리하기 위하여 광역계획제도를 신설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수도 등의 처리·수용·공급능력에 적합하도록 그 용적·용도를 정하는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건설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에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나. 현재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정되는 15개의 지구중 교육 및 연구지구, 업무지구 및 임항지구를 시설보호지구로 통합하여 필요에 따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지지구 및 특정+가구정비지구는 폐지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현실성있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함.
- 다.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공업단지·재개발지역 등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계획구역안에서 상세계획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라. 건설부장관은 도로·철도 등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여러 도시의 기능을 상호연계시킴으로서 도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2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광역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입안되는 광역계획의 내용·입안자 등을 정함.
- 마.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벌금 및 과태료의 금액을 현실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